

29. 자메이카(Jamaic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	가입자·사용자 각 2.5% 자영자 5%	가입자·사용자 각 2.75% 자영자 6%	0.5% ↑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J\$1,500,000 / 없음	J\$1,500,000 / 없음	-
연금수급 개시 연령	65세	65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520주	520주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 및 현행법** : 1965년(국가보험, 1966년 시행)

2 제도형태

- **사회보험**
 - ※ PATH 현금이전프로그램에 따라 비기여방식(사회부조) 노령 및 장애급여 존재

3 적용대상

- **당연적용** : 근로자 및 자영자, 임의가입가능
- **적용제외** : 임시근로자 및 무보수 가사근로자
- ※ **특별보충제도** : 공무원, 교사, 지방자치단체 직원 및 기타 특정 공공부문 직원 대상

4 재원조달

- **가입자**
 - 가입소득의 2.75%(2020년 4월 기준 3%)
 - 가사근로자 및 임의가입자는 주 J\$150(2020년 4월 기준 J\$200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액은 없음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액은 J\$1,500,000(가사근로자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액 없음)

- 가입자의 보험료는 현금출산(가사근로자 한정) 및 의료급여의 재원으로 사용됨
- 보험료는 고용범주에 따라 주, 월, 분기 단위로 부과됨

○ 자영자

- 연 가입소득의 5.5%(2020년 4월 기준 6%)
- 주 최저보험료는 J\$150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액은 J\$1,500,000
- 자영자의 보험료는 의료급여의 재원으로 사용됨

○ 사용자

- 가입임금총액의 2.75%(2020년 4월 기준 3%)
- 가사근로자는 주 J\$150(2020년 4월 기준 J\$200)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액은 없음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액은 J\$1,510,000(가사근로자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액 없음)
- 사용자의 보험료는 현금출산(가사근로자 한정), 의료, 산재급여의 재원으로 사용됨

- 정부 : 없음.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
5

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
- 근로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이 연평균 10주로 보험료 납부기간이 52주 이상인 65세 도달자
- 가입자가 장애 또는 산재급여를 받은 각 주를 보험료 인정기간으로 간주
- 보험료는 70세까지 납부 가능
- 배우자수당 : 가입자와의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며 사회보험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55세 이상 여성, 60세 이상 남성 피부양 배우자
-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요청에 의하여 노령급여 국외지급 가능
- 노령일시금 : 65세 도달자로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으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52주 이상인 경우 지급

○ 장애연금

- 근로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이 연평균 10주로 보험료 납부기간이 156주 이상인 10% 이상 소득활동 영구 불가 판정을 받은 자
- 가입자가 장애 또는 산재급여를 받은 각 주를 보험료 인정기간으로 간주
- 배우자수당 : 가입자와의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며 사회보험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55세 이상 여성, 60세 이상 남성 피부양 배우자

- 노동사회보장부가 지정한 의료 자문관이 장애 심사 및 재심사 주기 권고를 담당함
- 장애연금은 퇴직연령 도달 시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- 장애연금은 국외지급 가능
- 장애일시금 : 보험료 납부기간이 156주 미만인 10% 이상 소득활동 영구 불가 판정 받은 자

○ 유족연금

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 또는 사망 시점에 보험료 납부기간이 156주 이상이고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이 연 평균 10주 이상인 경우 지급
- 수급가능 유족 : 배우자(사실혼 포함) 및 18세 미만 완전고아; 배우자는 본인 소득기록에 기초한 급여를 수급가능; 사망 시점에 미망인(홀아비)은 사망자와의 혼인기간이 3년 이상 이거나 사망자와 5년 이상 동거했어야 함
- 재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급여지급이 중단
- 재혼일시금 :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재혼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지급
- 유족연금은 유족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 요청에 의해 국외지급 가능
- 유족일시금 :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위한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52주 이상인 경우
 - 수급가능 유족 : 55세 이상 배우자로 영구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없거나 또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자; 사망자 자녀를 임신한 미망인; 18세 미만의 완전 고아, 사망 시점에 미망인(홀아비)은 사망자와의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사망자와 5년 이상 동거했어야 함
- 특별아동급여 : 18세 미만 혼외자녀의 사망한 모친이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고 부친은 사망했거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, 그 혼외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; 아동의 사망한 어머니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없었으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52주 이상인 경우 지급되며 해외지급 가능
- 장제비 : 사망자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 지급하며 해외지급 가능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기본급여에 소득연계급여를 가산하여 지급
- 기본급여 : 주 J\$3,400(가입자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이 연평균 39주 이상인 경우, J\$2,550(26주~38주인 경우), J\$1,700(10주~25주인 경우)
- 소득연계급여 : 근로기간 동안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금액 J\$13당 주 J\$0.06
- 배우자수당 : 주 J\$900
- 기본급여요소와 배우자수당은 보험계리적평가에 기초하여 주기적으로 조정
- 노령일시금 : J\$50,000을 일시금으로 지급

○ 장애연금

- 장애정도 10% ~ 100%에 따라 주 J\$320 ~ J\$3,200 지급
- 배우자 보조금 : 주 J\$900
- 급여는 보험계리적평가에 기초하여 주기적으로 조정
- 장애일시금 : J\$50,000 일시금 지급

○ 유족연금

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노령연금액 지급
- 수급가능 유족 : 55세 이상 또는 업무능력을 영구상실한 배우자; 제일 어린 자녀가 18세 도달 전까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 또는 사망자 자녀를 임신한 미망인에게 지급; 자녀가 없는 배우자에게는 1년 간 지급
- 재혼일시금 : 12개월에 상응하는 배우자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
- 고아연금 : 주 J\$4,900
- 유족일시금 : 배우자 J\$50,000, 고아 J\$55,000
- 특별아동급여 : 주 J\$4,900 지급. 사망한 모친이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J\$55,000을 일시금으로 지급
- 장제비 : 장례비를 지불한 자에게 J\$90,000의 일시금 지급

7

관리운영기관

○ 노동.사회보장부(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)

- <http://www.mlss.gov.jm>
- 국가보험국(National Insurance Division)과 지사를 통한 제도 운영

○ 국세청 (Tax Administration Jamaica)

- <http://www.jamaicatax.gov.jm>
- 보험료 징수

<2019년 ISSA 자료>